

<p>다. 대 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를 공정하고 신중하게 선정하기 위해 “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”의 자문기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본조례에서 위원회 설치근거를 두어야 자치법의 위계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됨. <p>라. 검토의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명예시민증심사위원회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것을 의무화한 필요적 사항임으로 본 조례(안) 개정은 법령의 형식과 위계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됨. <hr/> <p>以上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質疑答辯은 案件의 性質上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.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안 계시면 質疑答辯을 마치고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名譽市民證授與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겠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hr/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7조(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) ①명예시민증</p>	<p>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8조(종전의 제7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>○委員長 李喆鎬 文化觀光局 關係公務員 여러분,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.</p> <p>○金寅東委員 한 가지만 質問하면 안 될까요?</p> <p>한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. 이 다음에 會議 때 報告를 해 주셔야 되었는데, 우리가 동양극장을 당초에 서울시가 買入을 해서, 우리 나라 劇場의 嚆矢이고 또 그런 劇場文化의 産室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닌데 그래서 이 問題를 가지고 그 동안 市 當局이 所有主人 現代建設과 交渉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당초에 이것을 引受할 計劃으로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進行 中에 어느 날 갑자기 現代側에서 동양극장을 買入을 해서 버렸어요. 당시에 서울市長이 이 問題에 대해서 抗議를 하고 해서 그 때에 現代建設側으로부터 內諾을 받기를, 앞으로 짓는데 그 建物 內에 文化施設을 반드시 넣겠다, 말하자면 劇場施設을 포함한 文化施設을 거기다 반드시 넣겠다고 한 事實이 있습니다.</p> <p>그래서 다음 會議 때 내가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었는데 그래서 그 財閥의 放恣하고 무모한 그런 行爲에 대해서 그 때 온 言論界가 들끓고, 온 良識 있는 文化人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던 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問題가 지금 요즘에 보니까 建物이 한참 建設 中에 있는데 과연 그것이 維持되고 있고 서울시가 그 問題에 대해서 確</p>
--	--